

외국법령 2011-1

독 일 세 무 사 보 수 규 정

2011. 8. .

한 국 세 무 사 회 부 설
한 국 조 세 연 구 소

독일 세무사보수규정

현재 각국의 입법례 중 세무사보수규정을 법제화하고 있는 사례는 독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의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1982년 4월 1일 처음으로 세무사보수규정이 제정·발효되었다. 공식명칭은 “세무사, 세무대리인 및 세무자문회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¹⁾이며 약칭하여 ‘세무사보수규정(Steuerberatergebührenverordnung)’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형식은 법률인 세무사법(Steuerberatergesetz) 제64조의 위임에 따라 연방재무부장관이 제정한 법규명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독일 세무사보수규정 (Steuerberatergebührenverordnung)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①세무사의 독립적으로 행사된 직업활동에 대한 보수(수수료 및 경비)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규정의 적정한 적용) 이 규정에서 세무사의 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3조[최저수수료, 경비] ①수수료의 최저금액은 10유로로 한다.

②수수료에는 일반적인 사무비용도 포함된다.

③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우편·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될 요금, 문서일괄액 및 여비의 지불에 대한 청구권은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보수에 대한 합의) ①세무사가 법률상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요구할

1) “Gebührenverordnung fü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vom 17. 12. 1981 (BGBl. I S. 1442).

수 있는 것은 위임인의 세무신고가 문서로 제출되고 전권위임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세무문서가 위임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때에는 보수합의에 의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보수합의는 다른 합의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위임의 종류와 범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위임인이 자유의사로 및 아무런 유보없이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것을 세무신고가 제1문과 제2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②합의된 보수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게 높은 때에는 적정한 금액을 구하는 법적 쟁송을 통해 이 규정에 의해 계산되는 보수금액까지 감액될 수 있다.

제5조(다수의 세무사) 수입사무가 다수의 세무사에게 공동에 의한 처리의 목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개개의 세무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액의 보수를 받는다.

제6조(다수의 위임인) ①세무사가 동일한 사무에 관하여 다수의 위임인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회만 받는다.

②개개의 위임인은 세무사에게 자기만의 위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세무사에게 지급하게 될 수수료와 경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무사는 제1항에 따라 제40조 제5항의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 이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경비는 단 한 번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만기) 세무사의 보수는 당해 위임사무가 처리된 때 또는 당해 사무가 종료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제8조(선불) 세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및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수수료와 경비에 대하여 적정한 선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계산서) ①세무사는 자신이 서명하고 위임인에게 고지된 계산서에 따라서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기간의 진행은 계산서의 고지와는 상관 없다.

②계산서에는 개별 수수료와 경비의 금액, 선불금, 개개 수수료요건에 관한 간단한 표시, 경비내역 및 이 규정의 적용된 조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가치수수료의 경우는 대상의 가치도 적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시간요율에 따라 계산된 시간수수료는 통산될 수 있다.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에 있

어서는 전체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③위임인이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채 보수를 지불한 때에는, 세무사가 당해 서류철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한, 계산서의 고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수수료산정

제10조(가치수수료) ①가치수수료는 이 규정의 별표A, B, C, D, E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가치수수료는 당해 직업적 활동의 대상이 갖는 가치에 따라 계산된다. 이 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익의 가치가 중요하다. ②동일한 사무에서는 다수 대상의 가치는 통산한다. 다만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7조에 표시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표준수수료) 표준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는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경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직업적 활동의 범위와 난이도, 사무의 의미 및 위임인의 소득·재산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세무사의 특별한 책임위험도 포함될 수 있다. 대상가치에 정향하지 않는 표준수수료에 있어서는 책임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수료가 제3자에 의해 대신 납부되는 경우 세무사에 의해 내려진 수수료결정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상 구속력이 없다.

제12조(수수료의 지불대상범위) ①수수료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사무의 수임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세무사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②세무사는 수수료를 동일 사무에 있어서는 단 한번만 요구할 수 있다.

③대상의 부분부분에 대하여 상이한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는 개별 부분마다 별도로 계산된 수수료를 받되, 가치부분의 전체 금액으로부터 최고 수수료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상 받을 수는 없다.

④당해 사무가 미리 종결되거나 사무가 종결되기 전에 수임관계가 종료한 때라도, 이 규정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미 성립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세무사가 사무를 일단 종료한 후 동일 사무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을 수임할 때에는, 당해 사무를 처음부터 수임했을 때 받았었을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전의 수임사무가 2회계연도 이상 전에 종료한 때에

는 그 이후의 세무사의 행위는 별개의 사무로 본다.

⑥세무사가 개별적 단일 행위에 대하여만 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전체 사무를 수임한 세무사가 동일 행위에 대하여 받을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시간수수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간수수료를 계산한다.

1. 이 규정에서 시간수수료를 규정하는 경우.
2. 대상가치를 추정할 만한 충분한 연결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 제23조의 행위 및 소송외 권리구제절차(제40조), 행정집행절차(제44조), 법원에 의한 절차 및 기타 절차(제45조, 제46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간수수료는 30분당 19 내지 46유로의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일괄보수) ①동일한 위임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개별 또는 다수의 행위에 대하여 세무사는 일괄보수를 합의할 수 있다. 이 합의는 문서에 의하며 최소 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합의에서는 세무사에 의해 수임되는 활동의 내역과 수임기간 등이 개별·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일괄보수가 배제된다.

1. 최소한 해마다 반복되지 않는 세무신고의 처리
2. 문서에 의한 전문의견의 작성(제22조)
3. 제23조에 열거된 행위
4. 검사에의 참여(제29조)
5. 소송외 권리구제절차(제40조), 행정집행절차(제44조) 및 소송절차와 기타 절차(제45조)에서의 자문과 대리

③일괄보수의 수수료부분들은 세무사의 급부제공과 적정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3장 부가가치세, 비용보전

제15조(부가가치세) 보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우편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 세무사는 수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지불할 요금의 보상을 요구할 청구권을 갖는다. 세무사는 선택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 대신에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의 20%(동일한 사무에 있어서는 최고 20 유로까지) 일괄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문서일괄액) ①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문서일괄액을 받는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복사문서

가. 행정문서 또는 법원문서. 단 단해 문서의 생산이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규정에 근거하거나 법원이나 행정청 또는 그 밖의 절차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이나 관련인 및 대리인에게 통지하기 위한 문서. 단, 100건 이상의 복사문서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임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단, 100건 이상의 복사문서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그밖의 경우는 위임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에 한한다.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경우도 그러하다.

2. 제1호 라목에 열거된 복사 대신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문서

세무사가 팩스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복사문서의 생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문서일괄액의 금액은 변호사보수법상의 보수표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서일괄액의 금액은 동일한 사무 및 동일한 사법절차의 같은 심급에서는 통일적으로 산정된다.

제18조(출장) ①출장에 있어서는 세무사에게 여비로서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나아가 세무사는 일비와 부재수당(Abwesenheitsgeld)을 받는다. 여행목적이 세무사의 소속 (세무사)지회나 주소지가 위치한 자치단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여비로 보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구입비용, 유지·운영비용 및 운행한 킬로미터당 0.3 유로의 감가상각비와 출장으로 인해 자가용을 사용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금경비(특히 주차비용)을 포함한 가액

2.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비용.

③출장시 세무사는 일비 및 부재수당으로서 4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20유로,

4시간 내지 8시간에 대해서는 35유로,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60유로를 받으며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이들 금액에 50%의 추가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숙박비용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19조(다수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행) 다수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행인 경우에는 발생한 여행경비와 부채수당은 개별 사무의 단독수행시 발생하는 비용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제20조(개업장소의 이전) 개업장소를 이전한 세무사가 이전의 사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개업장소로부터 또한 성립되었을 여비와 부채비용의 경우에만 여비와 부채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납세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한 수수료

제21조(상담, 정보제공, 첫 회 상담) ①세무사는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상담이나 다른 수수료를 요하는 활동과 관련없는 정보제공에 대하여 별표A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제1문에서의 행위가 첫 번째 상담대화에 국한되거나 위임인이 소비자인 경우, 첫 번째로 의뢰인과 상담기회를 갖게 되는 세무사는 180유로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상담이나 정보제공이 조세범처벌관련 사무나 범칙관련 사무 등 수수료가 대상가치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하는 그밖의 사무에만 관련하는 때에는 당해 수수료는 19유로 내지 180유로의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는 세무사가 상담이나 정보제공과 관련한 그밖의 행위에 대하여 받는 수수료와 함께 계산하여야 한다.

②아직 당해 사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세무사가 항소가 상고가 성공할 것인가를 검토해줄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말라고 상담하거나 항소나 상고가 자기를 통해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E에 따른 수수료의 20분의 13을 받는다. 다만, 제1항 제3문에 의한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전문 의견) 세무사가 작성한 상세한 이유가 기술된 문서에 의한 전문 의견에 대하여는 별표A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10 내지 10분의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23조(그밖의 개별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A에 따른 수수료의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 | | |
|--|---------------|
| 1. 신고의 수정 | 2/10 내지 10/10 |
| 2. 유예의 신청 | 2/10 내지 8/10 |
| 3. 선납세액의 조정 신청 | 2/10 내지 8/10 |
| 4. 불합리를 이유로 한 감액확정의 신청 | 2/10 내지 8/10 |
| 5. 조세채무의 면제 신청 | 2/10 내지 8/10 |
| 6. 환급신청 | 2/10 내지 8/10 |
| 7.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 | 2/10 내지 10/10 |
| 8.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 신청 | 4/10 내지 10/10 |
| 9. 권리구제절차 이외에서의 원상회복 신청 | 4/10 내지 10/10 |
| 10. 그밖의 신청. 단, 납세신고시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한다. | 2/10 내지 10/10 |

제1호 내지 제10조의 행위가 동일한 대상에 관련한다면, 그 중 가장 높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행위만이 중요하다.

제24조(세무신고) ①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1. 개별 소득금액의 계산을 제외한 소득세신고의 작성에 대하여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표준금액)는 적극적 소득의 총합으로 하며 최소 6,000유로로 한다.
2. 소득금액의 계산을 제외한 소득의 특별확인의 신고에 대하여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5/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적극적 소득의 총합으로 하며 최소 6,000유로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확인의 신고를 제외한 법인세신고의 작성에 대하여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2/10 내지 8/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결손금공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하며 최소 12,500유로로 한다. 연결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귀속 전의 연결회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소득은 연결주체의 대상산정시 축소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특별확인의 신고에 대하여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5/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총합으로 하며, 최소 12,500유로로 한다.
 - 가. 조세상의 출자금계정(법인세법 제27조 제2항 1문)
 - 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3문)
 - 다. 법인세이익(법인세법 제37조 제2항 4문)
 - 라. 법인세법 제36조 제7항 소정의 기말금액 및 계속된 기말금액

5. 영업세의 신고에 대하여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면제세액과 영업손실을 고려하기 전의 영업수익으로 하며 최소 6,000유로로 한다.
6. 영업세분할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분할기준으로 신고된 월급과 영업수입금의 10%로 하며 최소 4000유로로 한다.
7.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당해 공급대와 공급받는 이가 조세채무자가 되는 공급대가의 총합금액으로 하며 최소 500유로로 한다.
8. 부수적 신고를 포함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8/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당해 공급대와 공급받는 이가 조세채무자가 되는 공급대가의 총합금액으로 하며 최소 6,000유로로 한다.
9. 사업용자산의 공정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재산명세의 작성에 대하여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14/2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총사업용자산으로 하며 최소 12,500유로로 한다.
10. 재산세의 신고 또는 공동사업단체의 재산의 특별확인 신고에 대하여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18/2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총재산으로 한다. 다만, 자연인의 경우는 최소 12,500유로, 법인 및 단체와 재단에 대해서는 최소 25,000유로로 한다.
11. 물적 회사의 비기명 주식의 공정가치에 대한 특별확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18/20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주식가치의 총합으로 하며 최소 25,000유로로 한다.
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에 따른 (이혼시)증식재산의 균배청구의 계산을 제외한 상속세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2/10 내지 10/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채무와 부담을 공제하기 전의 상속재산가치로 하며 최소 12,500유로로 한다.
13. 증여세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2/10 내지 10/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증여의 총가치로 하며 최소 12,500유로로 한다.
14. 자본소득세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6/2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납세의무있는 자본소득의 총합으로 하며 최소 3,000유로로 한다.
15. 근로소득세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6/2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그밖의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20%로 하며

최소 1,000유로로 한다.

16. 수입 및 수출공과금 및 수입공과금으로 지워지는 소비세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3/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적용할 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최소 1,000유로로 한다.

17. 수입공과금으로 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비세 영역에서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3/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납세신고에 있어서는 신고된 금액, 과세관청의 확정을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 최소 1,000유로로 한다.

18. 소비세환급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3/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신청된 환급액으로 하며 최소 1,000유로로 한다.

19. 투자보조금의 수급 신청에 대하여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당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20. 부가가치세법 제4a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신청된 환급액이다.

21. 해외에 거주하는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신청된 공제액으로 하며 최소 1,000유로로 한다.

22. 자본소득세의 환급과 조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환급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신청된 환급액으로 하며 최소 1,000유로로 한다.

23. 소득세법 제10장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2/10 내지 10/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신청된 당해연도 자녀부양금으로 한다.

24. 자가주택보조금법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2/10 내지 10/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신청된 자가주택보조금으로 한다.

25. 건축공급의 세액공제 신고에 있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신고된 공제세액(소득세법 제48조 이하)으로 하며 최소 1,000유로로 한다.

②세무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혼시)증식재산의 균배 청구에 대하여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5/10 내지 15/10의 범위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상가치는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최소 12,500유로로 한다.

③세무사는 근로소득공제신청에 대하여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4/20의 범위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상가치는 예상되는 당해연도 총 급여액으로 하며, 최소 4,500유로로 한다.

④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1. 토지소유에 대한 주된 확정, 계속등재 또는 사후확정 등의 신고의 작성 또는 평가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고의 작성
2. 소득세법 제15a조에 따른 계산가능한 결손의 확인을 위한 작업
3. 외국법인, 재단, 단체 및 외국 인적 회사에의 참가에 대한 신고의 작성
4. 소득세법 제50조 제5항 2문 제3호에 따른 환급신청의 작성
5. 소득세법 제50a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73e조에 따른 신고의 작성
6. 소득세법 제48b조에 따른 확인증명의 발령신청의 작성
7.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노령보조금 신청의 작성
8. 소득세법 제90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확정신청의 작성
9. 소득세법 제92a조, 제92b조 제1항에 따른 자가의 주거목적에 기여하는 주거의 사용신청 작성
10. 소득세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액의 확정신청의 작성
1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유예신청의 작성
12.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무제한적 납세의무의 신규개시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의 작성

제25조(잉여소득금액의 계산) ①농업·임업소득,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근로소득에 있어서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에 의한 잉여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B에 따른 수수료의 5/10 내지 20/10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대상가치는 총수입금액 또는 총지출금액의 각 최고금액으로 하며 최소 12,500유로로 한다.

②세무사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사전작업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③동일 소득유형으로부터 나오는 다수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며, 세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잉여소득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④세무사는 총지출을 넘어서는 총수입의 잉여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되는 설명문건에 대하여 별표B에 따른 수수료의 2/10 내지 12/10의 범위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상가치는 제1항 2문에 따른다.

제26조(평균소득율에 의한 농업·임업소득의 계산) ①평균소득율에 따른 소득

의 계산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B에 의한 수수료의 5/10 내지 20/10의 범위 내로 한다. 대상가치는 소득세법 제13a조 제3항 1문에 따른 평균율소득으로 한다.

②동일 위임인의 다수 농업·임업소득에 대하여 평균율에 따른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한 때에는 세무사는 각각의 계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제27조(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에 의한 계산) ①비독립 근로소득, 자본소득, (부동산 등)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12/20의 범위내로 한다. 대상가치는 총수입금액의 총합 또는 필요경비의 총합 중 각 최고금액으로 하며 최소 6,000유로로 한다.

②(부동산 등)세무사는 임대소득이 다수의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에 관련하고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총수입금액이 각각 구분되어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소득금액계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제28조(과세처분의 검사) 세무사는 과세처분의 검사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제29조(검사에의 참여) 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1. 종결협의를 조사보고서의 검토를 포함한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에의 참여 (조세기본법 제193조 및 EU명령 Nr. 2913/92, 1992. 10. 12),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의 과세기초의 산출(조세기본법 제208조)에의 참여 또는 조세감시조치(조세기본법 제209조 내지 제217조)에의 참여 등에 대하여는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2. 조사보고서에 대한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5/10 내지 10/10의 범위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30조(자기신고) 세무사는 세무신고의 수정, 보충 또는 추완을 위한 계산을 포함한 자기신고(조세기본법 제371조 및 제378조 제3항) 절차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10/10 내지 30/10의 범위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31조(협약) ①세무사는 조세사안에 있어서 과세관청 또는 제3자와의 협의에 대하여 별표A에 정한 수수료의 5/10 내지 10/10의 범위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②협약수수료는 세무사가 사실문제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한 협약(과세관청에 의해 명해지거나 위임자의 동의하에 과세관청 또는 제3자와 함께 수행하는 협약)에 협력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구두질문이나 전화질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세무상 기장 및 신고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장부의 셋업) 세무사는 장부의 셋업을 보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간 수수료를 받는다.

제33조(기장) ①전표의 작성을 포함한 기장에 대한 월수수료는 별표C에 정한 수수료의 2/10 내지 12/10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전표의 작성에 대한 월수수료는 별표C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위임인이 작성한 전표 또는 위임인이 생산한 부속자료에 따른 기장에 대한 월수수료는 별표C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④세무사는 위임인에 의해 정보처리를 위해 생산된 자료에 따른 기장이나 위임인에게 설치된 세무사의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한 기장에 대하여 정보처리와 정보처리프로그램의 투입에 대한 보상 이외에 별표C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10/20의 범위내의 월수수료를 받는다.

⑤위임인의 기장에 대한 계속적인 감독에 대한 월수수료는 별표C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⑥대상가치는 연매출 또는 비용총액으로부터 나오는 각 최고금액으로 한다.

⑦세무사는 기장과 관련한 그밖의 보조행위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⑧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수수료(제24조 제1항 제7호)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34조(근로소득의 기장) ①세무사는 급여계정의 첫 번째 설치 및 기본자료의 입력에 대하여 각 근로자에 대하여 2유로60센트 내지 9유로의 수수료를

받는다.

②세무사는 급여계정의 기장과 급여계산의 작성에 대하여 각 근로자와 계산 기간에 대하여 2유로60센트 내지 15유로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세무사는 위임인이 생산한 기장자료에 따른 급여계정의 기장 및 급여계산의 작성에 대하여 각 근로자 및 계산기간에 대하여 1유로 내지 5유로의 수수료를 받는다.

④세무사는 위임인이 생산한 자료 또는 위임인에게 설치된 세무사의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한 급여계정의 기장 또는 급여계산의 작성에 대하여 정보처리나 정보처리프로그램에 대한 보상 외에 각 근로자 및 계산기간에 대하여 50센트 내지 2유로60센트의 수수료를 받는다.

⑤세무사는 근로소득공제와 급여기장과 관련한 그밖의 행위에 있어서의 보조행위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신고에 대한 수수료(제24조 제1항 제15호)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제35조(결산업무) ①다음 각호의 결산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B에 정한 수수료의 다음 각호에 정하는 범위로 한다.

- | | |
|--|----------------|
| 1. 가.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작성 | 10/10 내지 40/10 |
| 나. 부속서의 작성 | 2/10 내지 12/10 |
| 다. 경영보고서(manegement report)의 작성 | 2/10 내지 12/10 |
| 2. 중간결산 또는 잠정결산의 작성(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5/10 내지 12/10 |
| 3. 가. 기업회계결과로부터 세무상의 결과 도출 | 2/10 내지 10/10 |
| 나. 기업회계로부터 세무회계의 작성 | 5/10 내지 12/ 10 |
| 4. 기초 대차대조표의 작성 | 5/10 내지 12/10 |
| 5. 청산 목적의 대차대조표의 작성 | 5/10 내지 20/10 |
| 6.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행위에 대한 문서에 의한 설명보고서의 작성 | 2/10 내지 12/10 |
| 7. 가.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시의 상담·협력 | 2/10 내지 10/10 |
| 나. 부속서 작성시의 상담·협력 | 2/10 내지 4/10 |
| 다. 경영보고서 작성시의 상담·협력 | 2/10 내지 4/10 |
| 감사업무를 제공함이 없이 넘겨받은 기말자료로부터 | 2/10 내지 6/10 |
| 8.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공동작성하는 경우 | |

②대상가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수정된 대차대조표 합계액과 당해연도 영업매출(betriebliche Jahresleistung) 사이의 금액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수정된 대차대조표합계액
3.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해설보고서에 기초한 결산작업에 중요한 대상가치.

수정된 대차대조표합계액은 대차대조표 차변계정의 합계액에 사적 자본회수와 공개배당을 포함하며, 사적 출자와 출자에 의한 자본증가 및 가치수정(평가)을 포함하여 계산된다. 당해연도 영업매출은 매출, 그밖의 영업수익, 경영참가수익, 기타 다른 유가증권으로부터의 수익, 금융자산의 대출, 기타 이자 및 이에 유사한 수익, 완제품 또는 미완제품에 대한 재고의 변경, 그밖의 차변항목으로 기재된 자가공급 및 비경상 수익 등을 포함한다. 만약 당해연도 영업비용이 영업매출보다 큰 때에는 당해연도 영업매출을 당상가치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당해연도 영업비용(betrieblicher Jahresaufwand)은 감가상각을 포함한 영업지출의 합계로 한다. 대상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수정된(평가감된) 대차대조표금액을 적극적 가치로 본다. 당해연도 영업매출 또는 그보다 큰 당해연도 영업비용이 수정된 대차대조표합계액의 5배를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대상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대상가치는 당해연도 영업매출이 3,000유로보다 작은 경우에는 수정된 대차대조표합계액으로만 구성된다. 대상가치는 수정된 대차대조표합계액이 3,000유로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영업매출로만 구성된다.

③세무사는 재고조사목록의 작성 또는 수정 또는 그밖의 대차대조표목록이 종결될 때까지의 결산사전작업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제36조(세무상의 검사) ①세무사는 기장, 개별 계정, 결산서의 개별 항목, 재산목록, 잉여소득계산 또는 세무목적의 증명서 및 그에 대한 보고서의 검사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서, 경영보고서 또는 그밖의 세무목적의 자산회계에 대하여 별표B에 정한 수수료의 2/10 내지 10/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및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2. 제1호에 다른 행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대상가치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37조(세무목적의 자산상황표, 재무상황표)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범위에 의한다.

1. 자산상황표 또는 재무상황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B에 정한 수수료의

5/10 내지 15/10의 범위내의 수수료

2. 제출받은 전기말 자료(검사업무의 제공을 제외한다)로부터 자산상황표 또는 재무상황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B에 정한 수수료의 2/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3.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문서에 의한 해설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B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대상가치는 자산상황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자산가치의 합계에 의하며, 재무상황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재무가치의 합계에 의한다.

제38조(증명서의 발급) ①세무사는 재산개요와 성과계산에 있어서 세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별표B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상가치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세무사는 세무증명서 발급에의 협력에 대하여 시간수수료를 받는다.

제39조(농업·임업에 대한 기장업무 및 결산업무) ①농업 및 임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와 제2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표작성을 포함한 정상적 기장업무에 대해서는 해마다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3/10 내지 20/10의 범위내의 수수료

2. 위임인이 작성한 전표 또는 위임인에 의해 작성된 전표부속자료에 따른 기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3/20 내지 20/20의 범위내의 수수료

3. 위임인이 설치한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처리나 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에 대한 대가 이외의 정보처리를 위한 다른 입력수단에 따른 기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16/20의 범위내의 수수료

4. 기장에 대한 정상적 감독에 대해서는 해마다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별표D에 정한 수수료’란 별표D의 a항목에 따른 수수료와 b항목에 따른 수수료의 합계를 말한다.

③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결산사전업무에 대해서는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5/10의 범위내의 수수료

2. 결산의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3/10 내지 10/10의 범

위내의 수수료

3. 기업회계상의 결산 또는 상사회계상의 결산으로부터 세무상의 결산을 도출하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결산이나 상사결산으로부터 세무상의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3/20 내지 10/20의 범위내의 수수료

4. 결산의 작성에 있어서 행하는 상담적 협력에 대해서는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1/20 내지 10/20의 범위내의 수수료

5. 세무목적의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8/10의 범위내의 수수료

6. 결산을 위한 문서에 의한 해설보고서에 대해서는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8/10의 범위내의 수수료

‘별표D에 정한 수수료’란 별표D의 a항목에 따른 수수료와 b항목에 따른 수수료의 합계를 말한다.

④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부의 셋업에 대한 도움제공에 대해서는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6/10의 범위내의 수수료

2. 기장을 개시함에 있어서 기초가치의 파악에 대해서는 별표D에 정한 수수료의 3/10 내지 15/10의 범위내의 수수료

⑤ 별표D의 a항목의 적용에 있어서의 대상가치는 영업면적(Betriebsfläche)으로 한다. 별표D의 b항목의 적용에 있어서의 대상가치는 사적 출자를 포함한 당해연도 매출로 하며 사적 자본회수를 포함하여 최소한 비용금액에 의한다. 제3항의 경우 100,000유로를 넘는 금액은 1/2로 줄인다.

⑥영업면적(제5항)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헥타당 당해연도 매출이 1,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된 면적의 1배를 계상한다.

2. 헥타당 당해연도 매출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된 면적의 수배(헥타당 당해연도 매출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부터 나오는 수)를 계상한다.

3. 임업에 이용된 면적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된 면적의 1/2

4. 관리되는 저수지 면적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면적의 1/2

5. 임대에 의해 이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용되는 면적의 1/4

⑦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정신고수수료(제24조 제1항 제7호)가 함께 지불되어야 한다.

제6장 소송의 권리구제절차 및 행정집행절차상 대리에 대한 수수료

제40조(행정관청에의 절차) ①세무사는 행정청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5/10 내지 25/10의 범위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13/10을 넘는 수수료는 수임해야 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수임사무가 어려운 법률적 설명이나 중대한 논쟁대상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종류의 문서작업에 국한되는 경우 수수료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3/10으로 한다.

②세무사가 제1항의 절차에 선행하는 행정절차에서 제28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때에는, 당해 사무수수료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3/10 내지 20/10의 범위내의 수수료로 할인된다.

③세무사가 제1항에 의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24조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때에는, 사무수수료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1/10 내지 7.5/10의 범위내의 수수료로 할인된다.

④세무사가 제1항에 의한 절차에 선행하는 행정절차에서 제23조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와 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합계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25/10를 넘을 수 없다.

⑤세무사가 같은 사무에서 다수의 위임인을 위해 행위하고 당해 직업적 활동의 대상이 동일한 것인 때에는 사무수수료는 개개 위임인에 대하여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3/10 만큼 증가되며, 제2항의 경우에는 2/10, 제3항의 경우에는 1/10만큼 증가한다. 수수료 증가는 위임인들이 연대하여 참여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다수의 수수료 증가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20/10, 제2항의 경우에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16/10, 제3항의 경우에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6/10을 넘을 수 없다.

⑥세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선행하는 행정절차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와 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합계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25/10를 넘을 수 없다.

⑦집행정지절차 또는 정지효의 제거에 관한 행정절차는 제1항에 의한 절차와 더불어 하나의 사무이다.

⑧하나의 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구제에 의해 다툼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의 취소, 이의신청, 폐지, 변경 또는 수정됨에 따라 종료한 때에는 당해 사무종료에 협력한 세무사는 별표E에 정한 수수료의 10/10을 받는다.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행정집행절차) 행정집행절차에서의 세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사법절차 및 기타의 절차

제45조(사법절차 및 다른 절차에서의 보수) 조세법원 및 행정법원에의 전심절차, 형사절차, 직능법원절차, 범칙금절차 등에서의 세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소송비용보조에 있어서의 보수) 소송비용보조에 의하여 국선으로 선임된 세무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변호사보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경과규정

제47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규정의 발효 이후에 처리가 시작된 사무
2. 행정청에의 절차의 대리. 단, 이 규정이 발표된 이후에 시작된 절차에 한한다.

②세무사가 이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위임인과 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한 때에는 그러한 한에서 이 규정은 최소한 발효후 2년후부터 적용한다.

제47a조(경과조치) 사무의 종료를 위한 수입이 개정규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무사의 보수는 지금(그때)까지의 법에 따라 산정한다. 세무사가 위임인과 수행할 행위에 대하여 최소 1년의 지속기간을 문서에 의한 합의하거나 제14조에 의한 일괄보수를 합의한 때 그리고 그 합의의 지속기간 중 이 규정의 개정규정이 발효한 때에는 세무사의 보수는 개정규정이 발효하는 해가 종료하는 때까지는 지금까지의 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문과 제

2문은 이 규정이 준용하는 규정이 개정된 때에도 적용한다.

제48조 <삭제>

제49조(발효) 이 규정은 1982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별표A (자문수수료 테이블)

대상가치(표준금액) (단위:Euro)		수수료(10/10) (단위: Euro)
300	까지	25
600	까지	45
900	까지	65
1,200	까지	85
1,500	까지	105
2,000	까지	133
2,500	까지	161
3,000	까지	189
3,500	까지	217
4,000	까지	245
4,500	까지	273
5,000	까지	301
6,000	까지	338
7,000	까지	375
8,000	까지	412
9,000	까지	449
10,000	까지	486
13,000	까지	526
16,000	까지	566
19,000	까지	606
22,000	까지	646
25,000	까지	686
30,000	까지	758
35,000	까지	830
40,000	까지	902
45,000	까지	974
50,000	까지	1,046
65,000	까지	1,123
80,000	까지	1,200
95,000	까지	1,277
110,000	까지	1,354
125,000	까지	1,431
140,000	까지	1,508
155,000	까지	1,585
170,000	까지	1,662
185,000	까지	1,739
200,000	까지	1,816
230,000	까지	1,934
260,000	까지	2,052
290,000	까지	2,170
320,000	까지	2,293
350,000	까지	2,347
380,000	까지	2,399
410,000	까지	2,450
440,000	까지	2,499
470,000	까지	2,547
500,000	까지	2,594
550,000	까지	2,663

600,000	까지	2,730
5,000,000유로 미만		매 시작하는 50,000유로당 수수료 120유로 추가
5,000,000유로 ~ 25,000,000유로		매 시작하는 50,000유로당 수수료 90유로 추가
25,000,000유로 이상		매 시작하는 50,000유로당 수수료 70유로 추가

별표B (결산수수료 테이블)

대상가치(표준금액) (단위:Euro)		수수료(10/10) (단위: Euro)
3,000	까지	39
3,500	까지	46
4,000	까지	54
4,500	까지	61
5,000	까지	69
6,000	까지	77
7,000	까지	84
8,000	까지	92
9,000	까지	97
10,000	까지	103
12,500	까지	108
15,000	까지	121
17,500	까지	133
20,000	까지	143
22,500	까지	153
25,000	까지	162
37,500	까지	172
50,000	까지	210
62,500	까지	243
75,000	까지	271
87,500	까지	283
100,000	까지	296
125,000	까지	339
150,000	까지	377
175,000	까지	410
200,000	까지	440
225,000	까지	467
250,000	까지	491
300,000	까지	514
350,000	까지	559
400,000	까지	599
450,000	까지	634
500,000	까지	668
625,000	까지	699
750,000	까지	776
875,000	까지	843
1,000,000	까지	903
1,250,000	까지	957
1,500,000	까지	1,062
1,750,000	까지	1,154
2,000,000	까지	1,237
2,250,000	까지	1,311
2,500,000	까지	1,378
3,000,000	까지	1,441
3,500,000	까지	1,566
4,000,000	까지	1,676
4,500,000	까지	1,776
5,000,000	까지	1,868

7,500,000	까지	2,182
10,000,000	까지	2,536
12,500,000	까지	2,824
15,000,000	까지	3,064
17,500,000	까지	3,268
20,000,000	까지	3,444
22,500,000	까지	3,669
25,000,000	까지	3,876
30,000,000	까지	4,264
35,000,000	까지	4,620
40,000,000	까지	4,951
45,000,000	까지	5,261
50,000,000	까지	5,554
125,000,000유로 미만	매 시작하는 5,000,000유로당 수수료 219유로 추가	
125,000,000유로 ~ 250,000,000유로	매 시작하는 12,500,000유로당 수수료 383유로 추가	
250,000,000유로 이상	매 시작하는 25,000,000유로당 수수료 546유로 추가	

별표C (기장수수료 테이블)

대상가치(표준금액) (단위:Euro)		수수료(10/10) (단위: Euro)
15,000	까지	58
17,500	까지	64
20,000	까지	70
22,500	까지	75
25,000	까지	81
30,000	까지	87
35,000	까지	93
40,000	까지	98
45,000	까지	104
50,000	까지	110
62,500	까지	116
75,000	까지	127
87,500	까지	139
100,000	까지	150
125,000	까지	168
150,000	까지	185
200,000	까지	220
250,000	까지	254
300,000	까지	289
350,000	까지	324
400,000	까지	353
450,000	까지	381
500,000	까지	410
500,000유로 이상		매 시작하는 50,000유로당 수수료 29유로 추가

별표D

a. 농업수수료 테이블 - 영업면적

영업면적 (단위:Hektar)		수수료(10/10) (단위: Euro)
40	까지	296
45	까지	317
50	까지	337
55	까지	356
60	까지	375
65	까지	392
70	까지	408
75	까지	423
80	까지	437
85	까지	450
90	까지	462
95	까지	472
100	까지	482
110	까지	506
120	까지	529
130	까지	551
140	까지	573
150	까지	595
160	까지	616
170	까지	636
180	까지	656
190	까지	675
200	까지	694
210	까지	712
220	까지	730
230	까지	748
240	까지	764
250	까지	780
260	까지	796
270	까지	811
280	까지	825
290	까지	839
300	까지	852
320	까지	880
340	까지	908
360	까지	935
380	까지	961
400	까지	987
420	까지	1,012
440	까지	1,037
460	까지	1,061
480	까지	1,084
500	까지	1,107
520	까지	1,130
540	까지	1,152

560	까지	1,173
580	까지	1,194
600	까지	1,215
620	까지	1,235
640	까지	1,254
660	까지	1,273
680	까지	1,291
700	까지	1,309
750	까지	1,349
800	까지	1,385
850	까지	1,415
900	까지	1,441
950	까지	1,462
1,000	까지	1,478

2,000	까지	헥타당	1,35 추가
3,000	까지	헥타당	1,23 추가
4,000	까지	헥타당	1,10 추가
5,000	까지	헥타당	0,98 추가
6,000	까지	헥타당	0,86 추가
7,000	까지	헥타당	0,74 추가
8,000	까지	헥타당	0,61 추가
9,000	까지	헥타당	0,49 추가
10,000	까지	헥타당	0,36 추가
11,000	까지	헥타당	0,24 추가
12,000	까지	헥타당	0,12 추가
12,000	부터	헥타당	0,12 추가

b. 농업수수료 테이블 - 당해연도 매출

당해연도 매출(제39조 제5항)	(단위:Euro)	수수료(10/10) (단위: Euro)
40,000	까지	308
42,500	까지	323
45,000	까지	338
47,500	까지	354
50,000	까지	369
55,000	까지	399
60,000	까지	428
65,000	까지	458
70,000	까지	486
75,000	까지	515
80,000	까지	544
85,000	까지	572
90,000	까지	600
95,000	까지	628
100,000	까지	655
105,000	까지	682
110,000	까지	709
115,000	까지	736
120,000	까지	763

125,000	까지	789
130,000	까지	815
135,000	까지	841
140,000	까지	868
145,000	까지	893
150,000	까지	919
155,000	까지	945
160,000	까지	970
165,000	까지	996
170,000	까지	1,021
175,000	까지	1,046
180,000	까지	1,071
185,000	까지	1,096
190,000	까지	1,121
195,000	까지	1,146
200,000	까지	1,170
205,000	까지	1,195
210,000	까지	1,219
215,000	까지	1,243
220,000	까지	1,268
225,000	까지	1,292
230,000	까지	1,315
235,000	까지	1,339
240,000	까지	1,386
245,000	까지	1,386
250,000	까지	1,409
255,000	까지	1,432
260,000	까지	1,456
265,000	까지	1,478
270,000	까지	1,501
275,000	까지	1,523
280,000	까지	1,545
285,000	까지	1,567
290,000	까지	1,589
295,000	까지	1,610
300,000	까지	1,631
305,000	까지	1,652
310,000	까지	1,673
315,000	까지	1,693
320,000	까지	1,713
325,000	까지	1,733
330,000	까지	1,753
335,000	까지	1,772
340,000	까지	1,791
345,000	까지	1,810
350,000	까지	1,828
355,000	까지	1,847
360,000	까지	1,865
365,000	까지	1,882
370,000	까지	1,900

375,000	까지	1,917
380,000	까지	1,929
385,000	까지	1,951
390,000	까지	1,967
395,000	까지	1,983
400,000	까지	1,999
410,000	까지	2,030
420,000	까지	2,061
430,000	까지	2,092
440,000	까지	2,122
450,000	까지	2,151
460,000	까지	2,180
470,000	까지	2,208
480,000	까지	2,235
490,000	까지	2,260
500,000	까지	2,285
500,000유로 초과		매 시작하는 500,000유로당 수수료 132유로 추가

별표E (권리구제 테이블)

대상가치	(단위:Euro)	수수료(10/10) (단위: Euro)
300	까지	25
600	까지	45
900	까지	65
1,200	까지	85
1,500	까지	105
2,000	까지	133
2,500	까지	161
3,000	까지	189
3,500	까지	217
4,000	까지	245
4,500	까지	273
5,000	까지	301
6,000	까지	338
7,000	까지	375
8,000	까지	412
9,000	까지	449
10,000	까지	486
13,000	까지	526
16,000	까지	566
19,000	까지	606
22,000	까지	646
25,000	까지	686
30,000	까지	758
35,000	까지	830
40,000	까지	902
45,000	까지	974
50,000	까지	1,046
65,000	까지	1,123
80,000	까지	1,200
95,000	까지	1,277
110,000	까지	1,354
125,000	까지	1,431
140,000	까지	1,508
155,000	까지	1,585
170,000	까지	1,662
185,000	까지	1,739
200,000	까지	1,816
230,000	까지	1,934
260,000	까지	2,052
290,000	까지	2,170
320,000	까지	2,288
350,000	까지	2,406
380,000	까지	2,524
410,000	까지	2,642
440,000	까지	2,760
470,000	까지	2,878
500,000	까지	2,996
500,000유로 초과		매 시작하는 500,000유로당 수수료 150유로 추가